#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2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이양수·성일종·김태호

조경태 · 조태용 · 엄태영

김성원 · 이헌승 · 홍문표

한기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들 또한 큰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임. 농업의 존폐위기 상황에서 농업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임.

이러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생선성 악화, 대외경 쟁력 약화, 농업인 소득감소, 농촌 정주여건 악화, 농촌 일자리감소로 인하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 나.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 다.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2024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2025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 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제2호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을 각각 "202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2021년"을 각각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을 "제5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0년 12월 31일</u> 이전	<u>2020년 12월 31일(제2</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호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u> 일)</u>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략)

####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u> 1월 1일부터 <u>2021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2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2</u>
3년
<u>.</u>
 1. <u>2024년</u> <u>2024년</u> -
·
1. <u>2024년</u> <u>2024년</u> -
1. <u>2024년</u> <u>2024년</u> -
1. <u>2024년</u> <u>2024년</u> -  2. <u>2025년</u>
1. <u>2024년</u> <u>2024년</u> -  2. <u>2025년</u> ]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1. <u>2024년</u> <u>2024년</u> -  2. <u>2025년</u>
1. <u>2024년</u> <u>2024년</u> -  2. <u>2025년</u> ]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u>2023년</u> -
	<u>2</u>
<u>024년</u>	<u>2024년</u>
	-,
② <u>2025년</u>	
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 ①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제5호는 2023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ठोम,
1. ~ 6. (현행과 같음)

- 1. ~ 6. (생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